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민병주,
박승진, 송재혁, 아이수루,
왕정순, 유정인, 유정희,
정준호, 최재란, 한 신,
홍국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서 실시되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(9개 분야 21개 지역, 5천㎡~ 평가대상 규모 미만)으로 환경청에서 실시하며, 동법 제42조에 따른 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(이하 “조례 환경영향평가”)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각종 개발사업(지자체별 상이)으로 시·도에서 실시함.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(정비사업 부지면적 6만㎡ 이상)와 조례 환경영향평가(서울시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~30만㎡, 건축물 연면적 10만㎡ 이상)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. 즉, 중대형 사업장이 오히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- 상위법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이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,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민간사업 대상 사업 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과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대상사업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 1. ~ 4. (생 략)	제4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대상사업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과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)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